

##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6-3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10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  
(기획감사실장)

### 1. 제안이유

-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관리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.

### 2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
- 기획 12200-652('96. 9. 6)지적관리 기구·정원 승인

### 3. 주요골자

- 구분청 정원을 423명에서 424명으로 1명 증원

### 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.

### 5. 신 : 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.

##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제1호중 “423명”을 “424명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 (안)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본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 및 동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구 본 청 : 423명</p> <p>2. ~4. (생략)</p>	<p>제2(정원의 총수)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.... <u>424명</u></p> <p>2. ~4. (현행과 같음)</p>